

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33,200,508	18,996,015
일반회계	555,727,263	16,671,818
특별회계	77,473,245	2,324,197
공기업특별회계	75,668,946	2,270,06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4,012,125	1,020,36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41,656,821	1,249,705
기타특별회계	1,804,299	54,129
지하수특별회계	308,250	9,248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496,049	44,88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889,44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
3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